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4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김소희・박준태・이종욱

김예지 • 고동진 • 김성원

박덕흠 • 곽규택 • 서범수

주호영 • 우재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 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.

그러나 석유류 정제·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,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·화력발전과의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.

이에 석유류 정제·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·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(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).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2조제2항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라. 석유류 정제·저장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"석유류시설"이라 한다)
- 마. 천연가스 제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"천연가스시설"이라 한다)
- 제143조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라. 석유류시설: 석유류를 정제 · 저장하는 자
 - 마. 천연가스시설: 천연가스를 제조하는 자
- 제144조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라. 석유류시설: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의 소재지
 - 마. 천연가스시설: 천연가스 제조시설의 소재지
- 제146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4. 석유류시설: 생산량 또는 반출량 리터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
 - 5. 천연가스시설: 생산량 세제곱미터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2조(과세대상) ① (생 략)	제142조(과세대상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	②
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	
각 호와 같다.	,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:	2
다음 각 목의 것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라. 석유류 정제·저장시설로</u>
	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것(이하 이 장에서 "석유
	류시설"이라 한다)
<u><신 설></u>	<u>마. 천연가스 제조시설로서</u>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	(이하 이 장에서 " 천연가
	스시설"이라 한다)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143조(납세의무자) 지역자원시	제143조(납세의무자)
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	
호와 같다.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	2
의 납세의무자: 다음 각 목의	

자 가. ~ 다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3. (생략)

제144조(납세지)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.

- 1. (생략)
- 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:다음 각 목의 납세지가. ~ 다. (생 략)<신 설>

<신 설>

3. (생략)
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생략)

-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3. (생 략) <신 설>

-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석유류시설: 석유류를 정
제・저장하는 자
마. 천연가스시설: 천연가스
를 제조하는 자
3. (현행과 같음)
제144조(납세지) ------

-----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 라. 석유류시설: 석유류 정제
 · 저장시설의 소재지
 마. 천연가스시설: 천연가스

제조시설의 소재지
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현 행과 같음)

2) -----

-----.

3. (현행과 같음)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석유류시설: 생산량 또는 반

	출량 리터당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액수
<u><신 설></u>	5. 천연가스시설: 생산량 세제
	곱미터당 대통령령으로 정하
	<u>는 액수</u>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